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 의무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5920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 의무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 -----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국고 100%)하였음. 2023년도의 경우 구세군한아름¹⁾, 인천동구가족센터²⁾, 한국한부모연합³⁾,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⁴⁾ 등 4개 단체에 총 5,400만원을 지원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록수, 단체 특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은 부산광역시 700만원(1개 단체), 경상북도 4,000만원(2개 단체), 경상남도 1억 6,300만원(1개 단체) 등이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됨.

한편,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한부모가족단체지원사업’은 사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제성이 크지 않고, 사업 효과성, 수혜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모호하며, 재정관리에 대한 불명확성 등으로 국가 보조지원의 근거가 낮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24~’26년말)를 권고받았음.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예산부터 ‘한부모가족단체지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24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임.

1) 부자가족 대상 상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경제교육 실시

2) 인천지역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3)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 토론회 및 인식개선 캠페인

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에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탄력성이 줄어들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복지단체와 달리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한해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특히 법적 근거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러한 측면에서 비용 지원과 관련한 입법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나, 사회복지 대상 관련 타 법률과 비교할 때 당해 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부재하므로 한부모가족복지단체만을 위한 의무지원 규정은 특정 단체의 특혜로 보여

5) <복지단체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현황>

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법률을 유지하여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정 및 행정지원 의무화는 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법률을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⁶⁾ 및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체의 기능, 수행업무,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지원 의무화는 신중한 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청소년기본법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지원할 수 있다.</u>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u>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u>지원을 할 수 있다.</u>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u>지원을 할 수 있다.</u>

6) 경기 성남시, 경기 양평군

토가 필요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의무지원 규정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9
